



# 절차 장애인 차별 시정명령 업무



차별없는 세상을 향하

**장애인  
차별금지와  
권리구제**

# 장애인차별금지법 법률 시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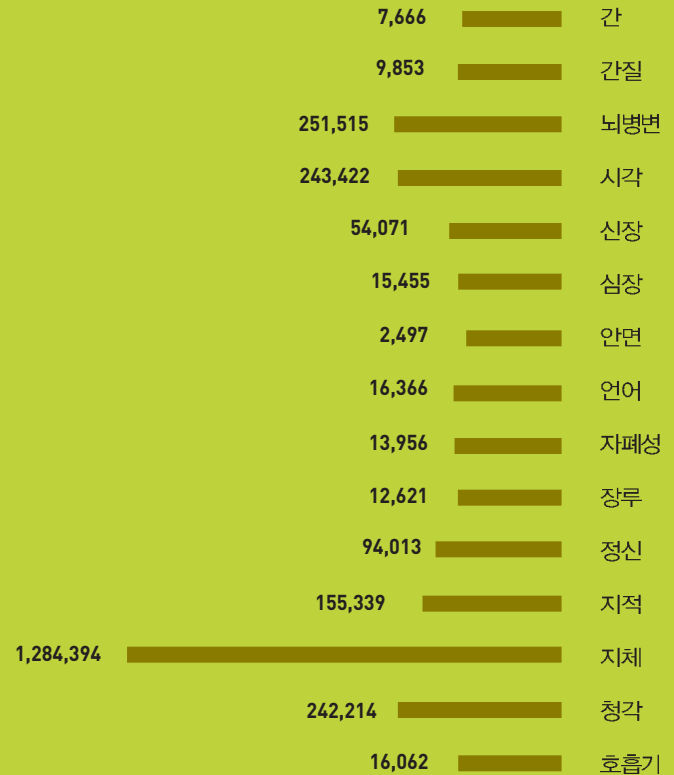


## 제정 목적

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,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는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하여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목적으로 합니다.

## 전국 장애인 유형 현황

2009년 6월말 현재





# 차별금지대상과 차별유형

## 차별금지대상

### 장애인

신체적·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에 있는 사람

### 장애인을 돕기 위한 사람

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, 그 밖의 장애인을 돕기 위한 사람

### 보조견 또는 장애인 보조기구

보조견 또는 휠체어, 의수, 의족, 보청기 등 장애인 보조기구

## 차별유형

### 직접차별

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·배제·분리·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

### 간접차별

형식상 공정한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

###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에 의한 차별

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게 편의시설이나 장애를 고려한 서비스 등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

### 광고에 의한 차별

광고 내용이 장애인에 대한 배제·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나타내는 경우

# 차별행위에 대한 구제 절차

##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한 권리구제

차별 받은 장애인, 피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차별사실에 관해 인권위에 진정을 할 수 있고, 이에 대해 인권위는 진정 내용에 대해 조사를 하게 되며 그 차별사실이 드러날 경우 가해자에게 시정권고를 함과 동시에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합니다.

▶ **진정접수**: 전국어디서나 국번없이 1331

## 법무부장관을 통한 권리구제

### 시정명령

인권위의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피해의 정도가 심각하고 공익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무부장관은 피해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시정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.

1. 피해자가 다수인인 차별행위에 대한 권고 불이행
2. 반복적 차별행위에 대한 권고 불이행
3.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고의적 불이행
4. 그 밖에 시정명령이 필요한 경우

### 과태료

확정된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.

## 법원을 통한 권리구제

피해자는 손해배상 청구 및 구제조치 (차별적 행위의 중지 근로조건의 개선, 그 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 등)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장애인 차별 시정명령절차  
안내상세 문의

법무부인권정책과

T. 02) 2110-3213~4  
F. 02) 503-7046

차별없는 세상을 향한

